■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2. 12. 9.>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동일 치료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DM	④ 청구일수 일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⑥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판매금액)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 채혈침	원	/
	[ ] 인슐린 주사기	원	/
	[ ] 인슐린 주사바늘	원	/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⑦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준요양기관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⑧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 · 월 · 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수를 적습니다.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⑥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를 하고, 구입한 당뇨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⑧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